

## 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**성인지예산제도 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**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, 집행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

\* 관련법령 :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 2

◆ **대상회계 :** 일반회계, 기타 일반회계

◆ **대상사업**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분	대상사업	비고
필수	○ 여성정책추진사업	0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( ' 13~ ' 17)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, 0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,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평등을 개선 할 수 있는 사업
	○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0 성별영향분석평가법(2012.3.16.시행)에 따른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0 그 밖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,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권장	○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	0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◆ **제외대상 :**

□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등

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◆ 성인지 예산서 성격 :

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,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(예산서 첨부서류)